

의안번호	제734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4
----------	-----

발의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발 의 자 :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1. 개정이유

- 도내 인근 지역 간, 관광자원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지역연계관광'을 규정하고,
-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매력있는 관광코스 관련상품 개발과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충북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연계관광'을 정의함(안 제2조제8호)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관광진흥사업을 정함(안 제5조)
- 관광업무의 위탁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7조)
 - 대상업무를 추진사업(제5조)과 관광안내소(제6조)로 지정
- 보조금에 대한 조항 정비(안 제8조)
- 위탁 대상 업무 조항을 삭제함(종전 제9조 삭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공 보상을 삭제함(종전 제11조 삭제)
-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도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국내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전세기”란 국내·외여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해 임차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8. “지역연계관광”이란 도내 시·군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 등 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도지사는 관광객의 유치, 관광 진흥 등 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사업
2. 관광자원 개발 사업 및 관광(단지) 기반시설 확충 사업
3. 외국인 의료 관광 활성화 사업
4.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운영·마케팅 사업 등
5.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6.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7. 관광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8.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도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전세기 취항 등)
9.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활성화사업
10.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안내소) ① 도지사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와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관광안내소(이하 “관광안내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의 명칭, 업무, 소재지는 관광안내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5조와 제6조의 업무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및 범위와 신청·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관광객유치 등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한 시·군에 대하여 사업추진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 ⑤ (생략)

제45조(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①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8.2.29>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지역연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가하였으나 추상적인 조항으로 기술적으로 사업의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